Yeosu
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18시 19분

목차

목차 2
등록현황 3
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

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

2014.04.17 조회수 128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1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~ 제40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제37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) 1. 자연경관지구 : 20퍼센트 이하, 2. 수변경관지구 : 20퍼센트 이하 제38조(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) 1. 자연경관지구 : 4층이하, 2. 수변경관지구 : 4층이하 제39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)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

목록

이전글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71

다음글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7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